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

김 지 환*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II.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운영관련 규정 |
| II.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조직관련 규정 | 1.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 1. 우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 2.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
| 2. 현행법상 기업지배구조 조직 | 3.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 |
| 3.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바람직한 모습 | 4.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
| | IV. 맺음말 |

I. 들어가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상적인 제도정비를 원하는 입법자와 현실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영진의 욕구에서의 괴리로 인하여 완벽한 법률 정비를 하고 실무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요원한 숙제가 되고 있다.¹⁾ 각국은 기업의 불상사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률 정비를 행하여 오고 있다.²⁾ 그런데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에는 규범적 당위성 외에도 현실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정부와 사회 그리고 학계와 경제계의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지배구조의 규범이 아무리 뛰어나도

* 경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1) 김지환, “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경영법률 제21집 제4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7), 285쪽.

2)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르나,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최고경영자등(Chief Executive Officer: CEO 등)의 경영행위를 어떻게 감시·감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는가라는 체제 구축 및 운영문제라 할 수 있다(Kevin Keasey/Mike Wright, *Corporate Governance* (John Wiley & Sons, 1997), 2쪽).

그 사회와 경제계로부터 외면 받으면 형식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고, 기업지배구조 규율이 모범적이지 못하면 투자자 특히 외국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상법은 종래 변형된 독일형의 감사제도 기관구조를 취하고 있다가 2001년 개정상법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영미식의 경영감독구조와 유사한 형태가 되었다. 나아가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서는 집행임원의 의무화,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강제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신설 등의 지배구조개정을 행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도 도입 이전에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지배구조 현실에서 합당한지,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에 기업지배구조의 틀이 글로벌화 되면서 동시에 영미식으로 가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하여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 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에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409조 2항), 그리고 지배주주와³⁾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율 규정 등(542조의8, 542조의 9 등)은 우리의 특수한 기업환경을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모습도 글로벌화에 맞추면서도 우리 기업환경과도 어울리게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기업경영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치기 마련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단지 함께 우리 기업지배구조를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 지배주주란 상법상 95%를 소유한 주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주주, 최대주주 등 제1대 주주로서 자신의 주식보유지분과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비율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Ⅱ.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조직관련 규정

1. 우리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미국에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기업 경영과 감독체제 개편의 동기가 된 것은 더 이상 경영진 선임과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만한 힘을 가진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될 정도로 주식이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고, 그 결과 주주 보다 경영자의 힘이 우세하여 경영자가 감독기관을 통제하고 그 기능까지 형해화 하였기 때문이다.⁴⁾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영자를 감독하는 체제를 새롭게 모색하고 구축하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 등이 고안되어 졌다. 그리고 그러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 등의 경영과 감독의 틀을 다시 짤 때 그렇게 하는 이념으로 주주자본주의 모델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이런 법제에서는 경영자에 대한 감독과 통제기관 구축⁵⁾ 및 그 효과적 작동, 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능한 경영진의 퇴출,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이 기업지배구조의 주된 목적이다.

독일 등의 경우에는 주식의 분산 정도가 대주주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또한 주식시장의 발달에 의한 기업의 자금조달 보다는 금융기관인 채권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 대주주와 경영진간에 안정적인 감독구조를 갖고 있다. 경영진의 힘이 주주 보다 우세하다 할 수 없으므로 경영진을 통제할 새로운 감독의 틀을 모색할 필요성이 작고,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도 이사회와 감사회라는 2원적 시스템으로

4) Jay W. Lorsch, *Pawns or Potentates* (Harvard Business School, 1989), 75쪽.

5) 미국에서 사외이사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이라고도 하는데, 독립이사는 이사회에서 비교적 감시역할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동경거래소의 상장회사는 독립임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김지환, 앞의 논문, 291쪽).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아가 감사회에는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 향상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 기업가치의 극대화 목적이라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모델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이든 기업의 불상사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한 국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고 기업의 글로벌화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해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배주주 자신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낮지만,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그리고 순환출자를 통하여 동일 기업집단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에 의하면, 동일인이 자연인인 43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4.17%이나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율을 포함할 경우 내부지분율은 65.11%가 된다고 한다.⁶⁾ 또한 지주회사 체제인 14개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도 동일인·친족 등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4.99%이나 내부지분율은 56.31%에 달한다.⁷⁾ 지배주주는 어떤 형태로든 경영에 참가하든지 최소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므로, 이러한 지배주주와 기타 주식이 분산되어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경영과 감독구조는 종래 독일과 영미 양 제도의 혼합형을 취하

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에 대한 정보공개”, 2012.7.2.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발표”, 2012.10.25.

고 있다가, 2001년 개정상법에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영미형의 기업지배구조 틀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2. 현행법상 기업지배구조 조직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으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구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상장회사 기관에 대한 특례규정을 2009년 개정상법으로 이관하였으며 나아가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와 감사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상법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바탕으로 하고 각종 업종의 특성에 따라 그 특별법인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서 그 업종의 특성에 맞게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⁸⁾

2.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임의기관이며,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원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383조 1항 단서) 그 경우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함)가 회사를 대표한다(383조 6항). 또한 감독기관인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409조 4항), 이 경우 업무감독기관은 주주총회가 된다(409조 6항). 이것은 소규모 주식

8) 정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하여 금융업권별 형평성과 규제차익해소를 위하여 2012년 6월 18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구기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2. 9. 참조).

회사에 이사회 및 감사를 강제하면 회사에 부담이 되므로 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이사회 및 감사를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2.2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기본형 회사)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383조1항)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단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음, 389조 1항). 회사는 이사회의 기능을 분리하고 업무집행감독권에 집중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408조의2 1항, 이를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함).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며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집행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게 된다(408조의2 3항 1호). 회사는 감사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거나(409조 1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415조의2).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415조의2 2항).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415조의2 3항).⁹⁾ 감사위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서는 ①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외감법 시행령 1조의4 2항 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이사회가 재의결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415조의2 6항).

그런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외감법 1조의4 2항 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함)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법 2조, 동시행령 2조 1항).

2.3 상장회사(총자산 1,000억원 이상 등; 중규모 상장회사)

상장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등(상법시행령 34조 1항)을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542조의8 1항 본문). 회사는 임의로 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위원회 형태는 후술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 형태로 기본형의 임의적 감사위원회 형태와 다르다(542조 1항 단서). 또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542조의10 1항, 시행령 36조 1항). 미성년자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다(542조의10 2항,

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법 2조, 동 시행령 2조).

시행령38조 1항). 또한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하며(외감법 2조의2 1항),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외감법 2조의2 3항).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하며(외감법 2조의2 4항),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외감법 2조의2 5항). 외부감사인인 감사업무를 수행함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하고(외감법 2조의3 1항), 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외감법 2조의3 2항).

한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함)를 마련하여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542조의13 1항, 2항, 동시행령 39조, 40조 내지 42조).¹⁰⁾ 준법지원인의 임면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고(542조의13 4항),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 상근이다(542조의13 6항).

10) 이에 대하여는 준법통제는 내부통제의 일부분이라서 굳이 분리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낭비라는 지적이 강함(대한상공회의소 등 “준법통제제도 관련 상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2012. 1), 2쪽).

2.4 상장회사(총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542조의8 1항, 시행령 34조 2항). 이러한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542조의8 4항).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소수주주권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542조의8 5항). 또한 이러한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며,¹¹⁾

11) 일본은 2012년 8월 1일 “회사법제의 개정에 관한 요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요강안에는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제도(가칭)를 신설하고 있다(우리의 감사위원회와 유사함).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는 이사회 및 회계감사인을 두어야 하고 감사를 두어서는 안 된다(編集部,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要綱案の概要”, 商事法務 제1973호(2012, 8. 5), 6쪽). 감사·감독위원인 이사는 그 밖의 이사와는 구별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그 보수등도 그 밖의 이사보수와는 구별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감사·감독위원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감사·감독위원회는 감사·감독위원 3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감사·감독위원은 이사이면서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감독위원회 및 각 감사·감독위원은 기본적으로는 각각 위원회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각 감사위원이 가진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이에 더하여 감사·감독위원회가 선정하는 감사·감독위원은 주주총회에 있어서 감사·감독위원인 이사이외의 이사의 선해임등 및 보수등에 관하여도 감사·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사(감사·감독위원인 이사를 제외함)와의 이익상반거래에 관하여 감사·감독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의 추정규정(일회사법 423조 3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감사·감독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업무집행결정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으나 이사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중요한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결정을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결의에 의하여 중요한 업무집행(위원회설치회사에 있어서는 집행임원에게 결정의 위임을 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의 결정을 이사

감사위원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하며(415조의2 2항),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542조의11 1항, 2항).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이고(542조의12 1항),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542조의12 2항).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은 그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542조의12 3항). 즉 최대주주의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모든 경우에 적용됨). 그러나 총 자산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만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542조의12 4항).

3.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바람직한 모습

3.1 기업지배구조 조직 체제의 구분

우리 현행법상 기업지배구조 조직 체제의 구분은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금 규모, 상장여부, 총자산 규모 여하에 따라 나누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대소회사 구분입법을 하자는 이론과¹²⁾ 현실의 필요

에게 위임할 수 있다.

12) 양동석, “일본의 대소회사구분 입법에 관한 문제점 연구”, 상사법연구 14권 1호(한

성에 따른 것이다. 구분입법을 주장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폐쇄회사구분입법을 중시하는 견해와 상장회사구분입법을 주장하는 견해로¹³⁾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전자는 폐쇄회사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는 형태이고 후자는 상장회사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는 형태이다. 그런데 지배주주가 경영진을 통제하고 있는 소유집중형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식소유집중도에 따라 완전 지배형 회사, 불완전 지배형 회사, 경영자 지배형 회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유형태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상의 기업지배구조법제를 재편하자는 주장도 있다.¹⁴⁾ 자세히 소개하면, ① 완전 지배형 회사는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절대적 지배권이 인정되는 회사를 말하고, ② 불완전지배형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지배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5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③ 경영자 지배형회사는 최대주주에 의한 독자적인 회사지배가 불가능하고 분산된 다수의 주주에 의하여 이사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경영을 담당하는 구조의 회사 형태를 말한다.¹⁵⁾ ①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로 업무집행기관으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업무감독기관으로는 이사회를 두되 사외이사는 불필요하며, 업무감사기관으로는 감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기본형이라 한다. ②의 불완전지배형회사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하는데, 10~20% 지분율의 경우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또는 집행

국상사법학회, 1995), 84-89쪽; 왕순모, “대소회사 구분입법을 위한 기본구상”, 현대상사법의 제문제(일일 박상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21쪽; 김재형, “대소회사구분입법론-주주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구분입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19권 제2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179쪽.

13) 이영중, “주식회사구분입법론 소고”,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9), 353쪽.

14) 송종준,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법제의 동향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제언”,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1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3), 26-30쪽.

15) 송종준, 위의 논문, 29쪽.

임원과 집행임원 중 선택하게 하고, 업무감독기관으로는 이사회(사외이사 과반수)를, 업무감사기관으로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③의 경영자지배형회사는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업무집행기관은 집행임원으로, 업무감독기관은 이사회(사외이사 과반수), 업무감사기관으로는 감사위원회를 기본형으로 삼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조직 체제의 구분기준으로 자본(자산)규모 기준, 공개여부 기준, 주식분산도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사건으로는 사외이사와 집행임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등의 조직체계에 관한 구분 기준은 공개회사를 중심으로 하여야 어울린다고 판단된다. 공개회사의 경우에도 현행 상법은 자산규모기준으로 지배구조 조직 체제를 나누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경우 주식의 분산이 더 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한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 지배구조 조직을 갖추는데 따른 비용부담 측면도 매우 중시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산규모기준으로 지배구조체제를 획일화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시장별로(예컨대 한국거래소 시장 대 코스닥 시장) 지배구조 조직 체제를 달리 정하여 회사가 자율로 시장을 선택하게 하고, 투자자도 시장을 선택하게 하는 편이 어떨까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¹⁷⁾ 기업집단 지배의 중심에 지배주주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 기업집단의 사업목적은 백화점처럼 다양하고 기업집단 상호간에 소위 「일감몰아주기」 등을¹⁸⁾ 통하여 영향력 행사 또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기업집단 내의 각 회사는 법인격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체에 가깝

16) 송종준, 위의 각주와 동일면.

17) 기업집단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천경훈,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BFL 59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5); 이영중, “기업집단에서 회사기관의 의무와 역할”, 한국상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자료집(2013. 2) 등 참조.

18)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중여세가 금년부터 과세되고 있다. 또한 2013년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독점규제법에서 일감몰아주기에 규제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게 운영되고 기업집단 내의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틀은 지배 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전략실 등에서 정하며, 각 계열회사의 이사회는 단지 이를 받아들여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의사결정의 주체가 단일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집단 차원의 의사결정기구가 따로 있는 셈이다. 기업집단의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계획 수립, 신사업수행 주체, 기업집단 임원 인사, 기업인수, 대규모 기업자금 조달 등은 기업집단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 형태의 경우 종속회사의 영업양도나 주식양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회사의 영업양도와 같은 결과가 되므로 지배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반영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이른바 콘체른법(Konzernrecht)이라 하여 결합기업(verbundene Unternehmen)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배권과 그 이해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주식법 15조 내지 19조, 291조, 292조). 최근 일본 회사법 개정안에서도 자회사 주식양도시에 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규정,¹⁹⁾ 모자회사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공시 규정,²⁰⁾ 기업집단에서의 내부통제체제 구축, 다중대표소송 규정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회사법상은 기업집단에 관한 체계적인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401조의2),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412조의5), 연결재

19) 일본회사법과 법무성령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상세하게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단순히 의결권주식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특징이다(일 회사법 2조 3호, 4호, 회사규칙 3조 1항, 2항).

20) 주식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당해 양도에 관계되는 계약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양도하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주식회사의 총자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주식회사가 효력발생일에 당해 자회사의 총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불요로 한다(編集部, 앞의 자료, 9쪽). 또한 자회사 소수주주의 보호관점에서 모회사 등과의 이익상반거래에 관하여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에 있어서 정보공시의 충실을 도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제표의 작성(447조 2항) 등 일부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기업집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으며(동법 2조), 외감법상에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지배·종속회사(외감법 1조의2 2호)의 개념에 관하여, 지배·종속의 관계란 주식회사가 경제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그 주식회사(지배회사)와 그 다른 회사(종속회사)의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1조의3 1항). 우리 상법상에서도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이에 알맞은 기업집단지배구조에 관해서 규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2013년 상법개정안에서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이 있지만, 이것은 기업집단의 개념 혹은 지배·종속회사의 개념과 규율방안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2012년 일본 회사법 요강안을 보면, 일본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6호 내부통제체제의 내용에 기업집단에서의 업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제가 포함된다는 뜻을 회사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다(요강안 제2주 제1-1의 후주).²¹⁾

3.2 기업지배구조 조직 편제 방향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자산규모기준과 상장여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집행과 업무감독기관의 조직이 달라지는데, 조직 편제의 기본방향은 영미

21) 이에 대하여 경제계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현행법상 이사회의 의무를 벗어난 경우까지 그 의무로 요구할 여지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에 대하여도 모회사 이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데다가 지나치게 자회사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자회사의 자주성이 훼손되어 그룹경영 그 자체에 대한 위축효과가 염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坂本三郎/高木弘明/宮崎雅之/内田修平/塚本英巨,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に對する各界意見の分析(中)”, 商事法務 제1964호(2012. 4. 25), 23쪽).

의 지배구조 편제와 흡사하다. 상장한 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를 기본형으로 삼고 이러한 편제의 확대 강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조치,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서 업무집행기능을 제외하고 업무감독기능에 중점을 두는 집행임원 현실화 등으로 입법적 개선을 해 나가려 하는 것 같다.²²⁾ 이와 같은 입장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가 감사(監事) 또는 감사회제도보다 역할과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계속 강화해 나가려 하다 보니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조직이 엄격하게 강제되고 획일화 되어 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

생각건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확대,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점유 비율 확대, 집행임원 강제 등 기업지배구조 조직의 획일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 기업현실에 맞는지도 의문이며,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 판단되므로 지배구조 조직의 다양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간을 갖고 현행법상의 지배구조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상법은 단일 법인격을 가진 하나의 회사를 전제로 기업지배구조 조직을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대기업의 현실을 보면 기업집단을 이루고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지배구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기업지배구조 조직과 운영에서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방안을 상법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²³⁾

22) 상법상의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개정전의 감사기관 보다 감사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로는 이철송, 회사법강의 16판(박영사, 2009), 683쪽.

23) 김지환,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2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6), 181쪽 이하 참조.

3.3 기업지배구조 조직 구성

3.3.1 집행임원제도의 강제 의무화

3.3.1.1 2013년 상법개정시안

2012년 개정상법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408조의2 1항, 408조의5 1항).²⁴⁾ 그런데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집행임원 설치를 의무화하고(개정시안 415조의2 1항 후단),²⁵⁾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이 아닌 이사로 하도록 하고 있다(408조의2 4항).²⁶⁾ 또한 집행임원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08조의2 3항 4호). 이 때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업무집행사항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위임금지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주식 양도의 이사회 승인(335조 1항),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권한(393조의2 1항, 2항) 등 특별규정은 포함하나,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일반적인 권한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3년 상법개정시안은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는

24)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는, 최완진,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재조명”, 상사법연구 제29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10. 11), 288쪽.

25) 집행임원제도 도입당시에 의무화 주장은, 홍복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06년 회사법 개정시안”,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6. 8), 173쪽; 송종준, 앞의 논문, 21쪽.

26) 집행임원을 도입하면 이사회의장과 CEO를 겸직금지하자는 견해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정찬형,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상사법학회 제28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9. 11), 49쪽; 황근수, “회사법개정안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기업법연구 제21권 제2호(한국기업법학회, 2007. 6), 223쪽; 장정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이사회제도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17권 제3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9), 352쪽).

사항을 특별규정사항으로 한정하고 그 특별개별규정을 열거하고 있다 (408조의2 3항 4호).

3.3.1.2 집행임원제도의 강제 의무화 찬반론

종래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에서는 집행임원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집행임원제도는 업무감독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제도의 채택은 감사위원회제도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²⁷⁾ 들고 있다. 그리고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 현행법하에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²⁸⁾ 그런가 하면 집행임원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① 이사회에 집행임원에 대한 선임권과 감독권을 부여하게 되면 주주총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이사회와 집행임원간에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③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권은 없으면서 책임은 이사와 동일한 집행임원으로서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띠기 쉽고, ④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는 대표집행임원의 경우에는 영향력 약화로 업무추진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²⁹⁾

그런데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있어서 집행임원 설치를 강제하는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있어서는, ①

27)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한국상사법학회, 2004), 284쪽.

28)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선진상사법률연구 제49호(법무부, 2010), 14쪽; 김효신,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사회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18집 제3권(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24쪽.

29) 김정호, “이사회구성과 사외이사제도”, 상사법연구 제29권 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10), 230쪽.

지배주주는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근)감사 대신 지배주주가 선임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게 된다는 문제점, ② 집행기관이 감독기관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독이 어렵게 되었고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③ 업무집행에서도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다수의 사외이사가 참여하게 되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³⁰⁾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감독기관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가지므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분리하여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한다. 또한 사외이사의 주요한 업무집행 의사결정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감독기능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비전문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하게 하며, 이사회 의장을 집행임원이 아닌 자로 제한함으로써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의 분리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다.³¹⁾

그러나 집행임원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 견해가 있다. 즉 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어떤 조직형태가 베스트인지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종류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특효적인 지배구조란 존재할 수 없으며, 비교법적으로도 ‘실정법’으로 업무집행 기구에 대해 특정의 기관형태를 기업규모와 결부하여 강제하는 예는 거의 없고, ②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획일적으로 특정의 지배구조를 갖도록 강제하는 법제를 취하게 되면 그 범주에 속한 기업간에는 지배구조를 둘러싼 경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점,³²⁾ ③ 대규모회사의 경우 지배

30)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법무부 상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3. 6. 14), 4쪽.

31) 정경영, 위의 논문, 6쪽.

32) 권종호,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12-13쪽.

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가 다수를 점한 이사회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므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은 전통회사에 비하여 상당히 제약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든다.³³⁾ 또한 업무집행과 업무집행에 관한 전략·정책결정은 서로 상호간에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고도의 경영판단이 필요한 기업 경영 현실을 간과한 것이며, 집행임원 제도가 도입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추후경과를 지켜 보면서 의무화를 추진하자고 한다.³⁴⁾

3.3.1.3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회사법은 비서역(corporate secretary)의 집행임원의 임명만 의무화하고 다른 집행임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임의로 하고 있다(DGCL §142(a), MBCA §§8.40(c), 8.41). 비서역은 일반적으로 각종 증서나 주권에의 서명권한을 가지고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장부에 기록·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일본 회사법의 경우 위원회설치회사에 있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가 강제되고 나머지 회사는 자율이다.³⁵⁾ 그런데 우리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서는 감사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을 의무화하려는데 이것은 매우 경직되고 획일화된 지배구조를 회사에 강요하게 된다. 무엇보다 감독형이사회제도는 사외이사가 제기능을 수행할 때 가능한데,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기업실정에서 사외이사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으로 경영자를 통제하게 되는데,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임면권을 가지므로 주주가 경영자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주의 힘에서 경영자가 벗어나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집행임원은 사외이사를 겸직하

33) 권중호, 위의 논문, 14쪽.

34) 배상근,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법무부 상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3. 6. 14), 22-23쪽.

35) 江頭憲治郎, 株式會社法(有斐閣, 2007), 496쪽.

지는 못하더라도 사내이사는 겸직할 수가 있는데,³⁶⁾ 그렇다면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고 지배주주의 영향력하에 있는 이사를 집행임으로 선임하여 겸직하게 한다면 집행임원을 의무화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회사의 사내이사는 업무담당을 하므로 집행임원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를 달리 법상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다.

3.3.2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감사위원회는 ①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유형(542조의11)과 자산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임의로 설치하는 유형(542조의10), 또는 ② 자산 1천억 미만의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유형(415조의2)으로 구분된다. 전자 ①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임면하고(542조의12 1항), 후자 ②는 이사회에서 각각 임면권을 가진다(393조의2 2항).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제1단계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한 후에 제2단계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542조의12 2항)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³⁷⁾ 이때 집중투표제는 이사선임시에 적용되고(382조의2), 대주주의 감사선임시의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 적용된다(542조의12 3항 및 4항). 또한 총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사외이사인 경우에 주주총회 선임시에만 3%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542조의12 4항).

36) 겸직금지 주장은 정찬형, 앞의 논문, 49쪽; 윤성승,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연구 제20권 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05, 12), 43쪽. 이에 반하여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희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상사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명(한국상사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2007. 2. 25), 25쪽.

37) 정경영, 앞의 논문, 9쪽.

감사위원회 위원 일괄선출방식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는 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하여 대주주의 3% 초과 의결권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선임단계에서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³⁸⁾ 또한 사외이사이든 사외이사가 아니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시에는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2대 주주 등 대주주의 3%초과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는 해임시에도 마찬가지로 선임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³⁹⁾ 이러한 의견을 받아 들여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하고(개정시안 542조의12 2항),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은 사외이사이든 사외이사가 아니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며(개정시안 542조의12 3항),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및 해임의 경우 3% 초과 보유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개정시안 542조의12 4항). 사외이사이든 사외이사가 아니든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에 3%초과 의결권 제한은 제1대 주주든 제2대 주주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 대하여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런데 3% 초과보유주식 의결권제한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이고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

38) 정경영, 위의 논문, 12쪽.

39)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시에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2대 또는 3대 주주는 그들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합산하지 않고 각 개인별로 3% 의결권 제한을 받으므로 이로 인하여 적대적 M&A 등의 경우에 최대 주주등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 현상 초래 우려가 있다(코스닥협회, 앞의 의견(2011. 9), 5쪽).

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이 강제될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최대주주의 권한이 약해지고 이는 주주권 및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⁴⁰⁾ 또한 합산 3%를 적용하는 것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합산이 어려운 경우(예컨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경영권 다툼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합산 3%를 적용시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관계없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도 한다.⁴¹⁾ 원천적으로 감사선임시에 3% 초과 보유주식의결권제한은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기업현실을 반영하고 감사(監事)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이사와 감사라는) 성질이 전혀 다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시에도 적용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사대 감사위원회 제도는 경쟁하는 지배구조형태인데 감사의 장점을 감사위원회에도 적용하려 한다면, 감사위원회위원 중 사외이사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까지 3%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어쨌든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회의체이므로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감사위원회의 기능에는 문제도 없어 보인다.

3.3.3 사외이사 선임 의무 강화

근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상법개정안(2013. 2. 26 발의)에 의하면, ①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상장회사를 상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상법규정으로 이관하고, ②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3명 이상 그리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위 ①의 이유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대통

40) 배상근, 앞의 토론자료, 23쪽.

41) 배상근, 위의 토론자료, 24쪽.

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위 ②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회사의 범주를 넓힌다는 점에서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사외이사 구성비율의 증가가 기업의 경영효율성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부적절하며,⁴²⁾ 유능한 사외이사 충원의 장애요인으로 인력풀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외이사의 확대 적용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미 선임된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의 원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유능한 중견임원이 조기에 퇴출될 우려도 존재하며,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강화하면 연이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542조의8 4항), 엄격감사위원회의 설치(542조의11 내지 542조의12), 집중투표관련 정관변경시 의결권제한(542조의7),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시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보고의무 부과(542조의9)의 확대 적용 우려도 있다고 비판한다.⁴³⁾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공개회사에서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으로 적용대상범위를 단지 넓히려는 생각은, 사외이사 과반수의 이사회가 적정하고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형태인 것을 바탕으로 한 고정된 사고라 판단된다. 단순히 회사의 자산규모로 기업지배구조 부담존재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필연코 지배구조실패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3.3.4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중투표(cumulative voting)는 소액주주들의 대표자가 이사회에 진

42) 김현중,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기업집단의 내부통제구조를 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원, 2009), 20쪽.

43) 대한상공회의소외, 앞의 보도자료(2013. 3), 5-6쪽.

출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로써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이사회 내부에 당파적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사회 의견 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기동성과 효율성에 장애가 된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⁴⁴⁾ 각국은 집중투표제 청구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미국 RMBCA 제7.28조, 제8.04조에서는 집중투표청구를 행사하려면 정관상 허용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소위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 현행 상법은 정관상 집중투표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주주가 이사회 임을 집중투표청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opt-out 방식(392조의2 1항)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서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과 무관하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의무화하고, 나아가 집중투표청구를 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에 있어서 총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경우 1%, 총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0.5% 이상으로 낮추어(개정시안 542조의7 1항, 2항) 기업지배구조 형성에 관하여 소수과주주의 지분율에 따른 비례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⁴⁵⁾

이에 대하여 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상장유지비용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공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며, 코스닥상장요건 완화 및 코넥스 시장 개설 등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역행하며, 회사가 집중투표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화 한 것은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본다수결원칙(369조)과 배치되는 등 위헌적 소지를 최소화한 입법이며, 이사회에 이

44) 박수영,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70쪽, 82-83쪽.

45) 정경영, 앞의 논문, 16쪽.

질적인 자의 참여로 인한 회사기밀 노출의 부작용 방지, KT&G사건에
서와 같이 헤지펀드 등에 의한 경영간섭 및 회사기밀을 악용한 먹튀
등 심각한 부작용 방지차원에서 반대한다.⁴⁶⁾ 또한 집중투표제도는 소
수주주를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현실은 제2대 내지 제3대 대주주를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사실이고 2대 주주가 1대 주주를
제치고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역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⁴⁷⁾
생각건대 집중투표제를 주주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면 1주 1의결권
원칙 및 자본다수결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3.5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자격 요건 정비

상장회사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횡령
이나 배임행위, 사기파산, 분식회계 관련자들은 5년 동안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⁴⁸⁾ 이러
한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3.6 내부통제제도

미국의 COSO보고서(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ssion: COSO)의 영향을 받아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가
각국의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
또는 금융관련법의 준법감사인제도(compliance officer)가 법령준수의

46) 김태진, “2009년 1월 상법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방법과 소수주
주권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G사건을 계기로—”, 증권법학 제11권 제3호(한국
증권법학회, 2010), 294쪽; 대한상공회의소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3. 3)”, 1쪽, 3-4쪽; 박수영, 앞의 논문, 85쪽.

47) 권재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중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업법연구 제14집(한국
기업법학회, 2003. 9), 207쪽.

48) 이종걸, “기조연설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발전의 법적 과제—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한국기업법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2013. 5. 24),
5쪽.

내부통제이고,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⁴⁹⁾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고체제이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선언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금융관련법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자본시장법 28조 1항, 은행법 23조의3, 보험업법 17조). 일본 회사법은 자본금 5억엔 또는 부채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와 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통제담당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다(일회사법 348조 3항, 362조 4항, 416조 3항).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내부통제제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회사법에 둘 필요성 검토가 요망된다.

Ⅲ.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운영관련 규정

1.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우리의 경우 단일 기업이든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이든 경영에 지배주주가 참여하거나 지배주주의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종종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이나 횡령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의 재편에 있어서도 그러한 행위규제가 중심 논의사항이다. 영미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지는 주장이 다수 있다.⁵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9)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Sarbanes Oxley Act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50) 송종준, 앞의 논문, 31쪽.

2.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2013년 5월 28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행사하여 오던 중립적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⁵¹⁾ 이것은 일반 주주들의 총회참여가 저조해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의사반영에 소극적인 경향을 초래해 오던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⁵²⁾ 나아가 2009년 상법개정시에 도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⁵³⁾ 신설하였는데,⁵⁴⁾ 2013년 상법개정시안은 일정한 상장회사에 한하여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시안 542조의14).

이에 대하여 전자투표의무화는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 상존, 보안상 위험 내포, 전자투표가 소액주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⁵⁵⁾ 또한 전자투표제도가 완벽하게 시행되어 대부분의 주주가 총회에 참석

51)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314조

52) 코스닥협회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선임 안건이 있는 334사 중 확인 가능한 회사 302사 중 약 62%인 186개사가 예탁결제원의 중립투표제도를 이용하여 감사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코스닥협회, “상법에 대한 개선 의견(2011. 9)”, 6쪽).

53)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개최일 이전에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의 전자화 형태이고,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그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동시행령 5조의2 3항). 다만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전자투표의 재행사가 허용된다(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16조 2항). 하여튼 전자투표제도를 허용함으로써 의결권의 전자위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대리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54) 전자투표제가 도입된 지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45개 회사만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채택한 회사도 선박투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로 실무에서의 전자투표 활용은 미미하다.

55) 대한상공회의소외, 앞의 자료(2013. 3), 2쪽.

하지 않고 전자투표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결정된다면 이는 또 다른 주주총회 형해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⁵⁶⁾

생각건대 전자투표는 서면투표의 전자화에 불과하고 주주총회에서 의 질문과 토론을 할 수가 없어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⁵⁷⁾ 특히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나 왜곡정보로 군 중심리적 전자위임이 되거나 위임장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투표에 대한 세밀한 제도보완 없이 의무화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3.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였다(자본시장법 159조).⁵⁸⁾ 이것은 보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보공시로 대체하는 듯하다.

4.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주주대표소송은 그 회사의 주주에게만 인정되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는 현행 상법상 인정되지 않고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⁵⁹⁾ 이에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자는 의

56) 김순석,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법무부 상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3. 6. 14), 79쪽;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의 무화와 문제점”,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214쪽.

57) 동지; 김병태, 위의 논문, 214쪽.

58) 이중걸 의원 기초연설, 앞의 자료, 1쪽.

59)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전이 있고,⁶⁰⁾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그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의 확장해석을 통하여 손회사, 증손회사 등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¹⁾

살펴보면, 2013년 상법개정시안은, 예컨대 A모회사(51%소유)-B자회사(51%소유)-C손회사의 경우, A모회사의 주주는 B자회사 및 C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 또는 삼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B자회사는 C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B자회사 주주 또는 C손회사 주주는 각각 자신의 회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특히 C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A모회사의 주주, A모회사, B모회사의 주주, B모회사, C손회사 주주가 각각 다중 또는 단순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원고적격이 매우 늘어나고, 피고 이사의 입장에서는 중복제소위험이 너무 커다.⁶²⁾ 뿐만 아니라 예컨대 모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에는 모회사인 주주 외에 다른 주주 49%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⁶³⁾ 이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인 자회사 주주 49%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제기할 의도가 없는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60)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김지환,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검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34-40쪽.

61) 「자회사」라고 정하면, 상법 제342조의2 제3항에 따라 최소한 손회사까지는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될 것이라고 한다. 다만 증손회사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해석론과 판례에 맡긴다는 것이다(천경훈, 앞의 발표논문, 56쪽).

62) 김지환, 앞의 논문, 56쪽.

63)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도입 중간시안A(안)에서는 자회사 주주의 공동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완전모자회사간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므로 자회사 주주의 공동이익이라 함은 최종완전모회사의 이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山中修/近澤諒(山中修/近澤諒, 親會社株主と子會社少數株主の保護に關する規律の見直し, 商事法務 제1958호(2012. 2. 25), 23쪽).

모회사 주주가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한 이런 경우는 자회사 이사에 대한 제소의 길이 충분히 열려 있어 제소해태의 염려가 전혀 없다.⁶⁴⁾ 즉 우리 상법개정시안에 의하면 다중대표소송도입론자들이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 자회사 이사에 대한 제소해태의 가능성이 없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억제 및 손해전보의 가능성 등이 모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모회사 이사, 모회사 경영진 및 자회사 주주 3자간의 이익충돌을 무시한 채 다중대표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있는데, 종속회사 이사의 위법행위 억지 및 손해전보 등의 이유만으로 다른 명확한 이론적 근거없이 단순히 지배와 종속관계 또는 모자회사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개별 법인격을 넘어서 책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인격을 인정한 취지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및 당사자 적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 판례법에서는, ①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② 동일한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③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④ 양사의 이어나 임원이 공통이고, ⑤ 양사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경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⁶⁵⁾

사건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미국 판례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완전모자회사간에서 개별 독립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모자회사간에 통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법인격이 무시되고 지배·종속회사간에 법인격이 동일시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⁶⁶⁾

64) 이 경우에는 소수주주에 의한 임무해태의 억제기능이 작동되고 있다(위의 논문, 21쪽).

65) *Martine v. D. B. Martine Co.*, 10 Del Ch.211, 88A612(1913).

IV. 맺음말

2013년 상법개정시안에 대해서는 경제계에서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출발하여 입법화된 것이었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왔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2013년 8월 말에 정부는 상법개정시안에 관하여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기업지배구조는 한번 잘못 입법되면 그것을 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외국 투자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 사고는 바람직해 보인다.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형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찾기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하며,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기업지배구조는 계속해서 획일화하고 규제 일변도로 엄격화 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투고일 2013년 12월 31일, 심사(의뢰)일 2014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1일)

주제어 : 기업지배구조, 집행임원, 전자투표, 집중투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회

66) 김지환, “대표소송제도의 현황과 과제”, 상장협연구 2013 가을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3), 124쪽.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철송, 회사법강의 16판, 박영사, 2009.

江頭憲治郎, 株式會社法, 有斐閣, 2007.

Kevin Keasey/Mike Wright, *Corporate Governance*, John Wiley & Sons, 1997.

Jay W. Lorsch, *Pawns or Potentates*, Harvard Business School, 1989.

2. 논문

강희갑,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 기업환경”, 상사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명, 한국상사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2007. 2. 25, 3-27쪽.

권재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중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업법연구 14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9, 193-216쪽.

권중호, “집행임원제도의 의무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7-26쪽.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의무화와 문제점”,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92-120쪽.

김순석,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편”,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법무부 상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3. 6. 14, 78-87쪽.

김재형, “대소회사구분입법론-주주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구분입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19권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175-201쪽.

- 김정호, “이사회구성과 사외이사제도”, 상사법연구 29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0, 202-246쪽.
- 김지환, “개정상법에 있어서 회사지배구조”, 경영법률 21집 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7, 285-320쪽.
- _____, “대표소송제도의 현황과 과제”, 상장협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3 가을호, 94-128쪽.
- _____,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5집 2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181-215쪽.
- _____,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검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32-59쪽.
- 김태진, “2009년 1월 상법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방법과 소수주주권보호는 개선되었는가-KT & G사건을 계기로-”, 증권법학 11권 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0. 259-300쪽.
- 김현중, “경영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기업집단의 내부통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9, 13-26쪽.
- 김효신,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이사회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18집 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3-31쪽.
- 박수영,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3. 7. 8, 68-85쪽.
- 배상근,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편”,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법무부 상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3. 6. 14, 21-26쪽.
- 송종준,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법제의 동향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제언”, 상사판례연구 24집 1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3, 3-42쪽.
- 양동석, “일본의 대소회사구분 입법에 관한 문제점 연구”, 상사법연구 14권 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77-121쪽.
- 왕순모, “대소회사 구분입법을 위한 기본구상”, 현대상사법의 제문

- 제(일암 박상조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3-25쪽.
- 윤성승, “집행임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업법 연구 20권 4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12, 23-47쪽.
- 이영중, “기업집단에서 회사기관의 의무와 역할”, 한국상사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자료집, 2013. 2, 119-143쪽.
- 장정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이사회제도에 관한 고찰”, 비교 사법 17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9, 329-360쪽.
-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상사법 연구 23권 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251-295쪽.
-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법무부 상법개정안 공청회 자료), 2013. 6. 14, 2-17쪽.
- 정찬형,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선진상사법률연구 49호, 법무부, 2010, 1-66쪽.
- 천경훈, “기업집단의 법적 문제 개관”, BFL 5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 센터, 2013. 5, 3-59쪽.
- 최완진,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재조명”, 상사법연구 29권 3호, 한국 상사법학회, 2010. 11, 267-292쪽.
- 홍복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06년 회사법 개정시안”, 상 사법연구 25권 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6. 8, 163-207쪽.
- 황근수, “회사법개정안의 내용과 향후의 전망”, 기업법연구 21권 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6, 197-234쪽.
- 坂本三郎/高木弘明/宮崎雅之/内田修平/塚本英巨, “會社法制の見直しに關する中間試案に對する各界意見の分析(中)”, 商事法務 1964호, 2012. 4. 25, 20-35쪽.
- 山中修/近澤諒/山中修/近澤諒, “親會社株主と子會社少數株主の保護に關する規律の見直し”, 商事法務 1958호, 2012. 2. 25, 3-27쪽.

[Abstract]

In a Preferred Aspect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Ji-Hwan Kim*

Corporate Governance legislators want an ideal system maintenance, but a management is trying to pursue self-interest, so the gap is formed between legislators and management. Every country is trying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whenever there is a corporate scandal. However, the reorganiz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has normative rationality, justification must be realistic and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society, and the academic and business community consensus is required. No matter how good corporate governance, the social and economic world is received from the outside is nothing more than formal institutions. In addition, corporate governance is not a globalization, foreign investors receive from the outside.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2013 has to be enforced the executive officers, cumulative voting and electronic voting, and introduced to multiple derivative suit. However, I think,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to have sufficient time need to be considered.

Key Words : corporate governance, executive officer, cumulative voting, electronic voting, multiple derivative suit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 Politics Kyungnam University

